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수산부에 어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,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·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항만 운영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9. ~ 3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에 제7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3의2.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·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

제12조제3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7. 항만 운영 관련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리

제13장(제53조의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제53조의3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593”을 “59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89”를 “59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572”를 “574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2,928”을 “2,92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,817”을 “2,818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,794”를 “2,795”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53조의3제1항 관련)

조직	정원
해운물류국 1개 과	1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수산정책실) ①·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73. (생략) <u><신 설></u> 74. ~ 81. (생략) 제12조(해운물류국) ①·② (생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6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11조(수산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73. (현행과 같음) <u>73의2. 수산부산물물의 친환경적·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</u> 74. ~ 81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해운물류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36. (현행과 같음) <u>37. 항만 운영 관련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리</u> <u>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</u> <u>제53조의3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</u>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(제51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593</u>	<u>595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589</u>	<u>591</u>	+2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572</u>	<u>574</u>	+2
•	•	•	

[별표 3]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5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2,928</u>	<u>2,929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,817</u>	<u>2,818</u>	+1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,794</u>	<u>2,795</u>	+1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7